

[일련번호 : 22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등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7조(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의 발급 등)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[별지 제1호의 4서식]의 신청서와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」 (보건복지부)에 따르면 대여·리스 차량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‘대여 및 리스차량 표지’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읍·면·동장은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시 신대여 및 리스차량 표지 발급 시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가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부적정 내역

연 번	변경 일자	장애인 본인		차량번호	표지발급 내역		부적정 내역
		성명	생년월일		표지유형	비고	
1	2407 18				대여/리스본인용 _주차가능	유효기간 99991231	유효기간을 설정, 기재하지 않음
2	2301 13				장애인_보호자_ 주차가능	보행상장애 N	보행상장애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 발급
3	2208 29				장애인_보호자_ 주차가능	운전자(표영 환)	운전자를 본인으로 기재하였으나 보호자용 표지 발급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